

건설공제조합 전문인력(현장조사역) 채용 재공고

국내 최고의 건설전문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과 함께하실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주요업무

직 종	모집분야		모집인원	주요 업무
계약직	현장조사역	전북	0명	○ 보상센터 현장조사 업무 수행 (타절기성검사, 하자조사, 분쟁조정 등)
		대구	0명	

2.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기본요건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 <단, 정년(만60세)초과자 제외> ○ 우리 조합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장조사역	○ 발주처 공사관리 또는 건설회사 현장(공무 등)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건축기사 또는 토목기사 보유자 ※ 우대사항: 건축, 토목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6.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3. 급여조건

- 관련 경력연수 등 고려 협의 후 결정
- 급여조건은 재계약 시 변동 가능
- 기타 복리후생은 회사 내규에 따름

4. 전형절차 및 일정



□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5.05.13.(수) ~ 2025.05.23.(금) 16:00

○ 접수방법 : 첨부된 입사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포함)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접수 (cgbest@cgbest.co.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합격자 발표 : E-mail 개별 통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채용예정일 : 2025. 6월 중

□ 상기 일정은 우리조합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지원시 제출서류 : 지정양식은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경력사항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최종합격시 제출서류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조합에서 부담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괴

7. 기타사항

○ 제출서류 및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작성됨이 판명될 때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과소하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세부 전형절차 및 각 합격자 발표는 E-mail을 통해서 공지하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우리조합 인재개발팀으로 (02-3449-8653 / cgbest@cgbest.co.kr)에게 문의 바랍니다.

<채용 청탁 금지안내>

우리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시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